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2. 5. 00,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2. 4. 00. ~ 4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0 제1호2)를 삭제하고, 같은 호 3)부터 12)까지를 각각 2)부터 11)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